

1. 개정이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에 관한 조문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신청 관련 조문 정비(안 제77조, 제78조의2)

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신청 관련 조문과 서식 신설(안 제78조의3, 별지 제59호의2, 제59호의3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26. ~ 6. 5.) 예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제78조의2제1항(중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법 제8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도로교통공단에”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도”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 ①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 방법 및 기술의 명칭·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 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시·도경찰청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을 승인 한 때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59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E-mail :)		
신청 내용	목 적		
	내 용		
	기 술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 방법 및 기술의 명칭·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 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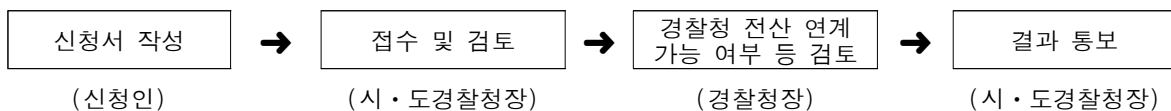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승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E-mail :)	
승인 내용	목 적	
	내 용	
	기 술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1. 제공받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이용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유효성과 동일하게 연동되어야 함(예: 정지, 취소, 갱신 등) 2. 여타 운전면허와 관련한 전산 연계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대응·조치해야 함 3. 보안 문제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생략)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③ ~ ⑤ (생략)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라</u>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u><삭 제></u> ① <u>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u> - ----- -----

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

② 제1항에도 -----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④ -----
-----제3항-----

-----제1항-----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해야 한다.

제78조의3(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 방법
및 기술의 명칭·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 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
는 자료

② 시·도경찰청장이 제1항의 신
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을 승인 한 때에는 별지 제
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
비스 제공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
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확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